# 2025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

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는 농식품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신뢰도를 향상시키고,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「2025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」을 추진하오니,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5년 2월 13일

## 1. 사업개요

- 1. 모집기간: 2025. 2. 13. ~ 2025. 3. 7.
  - \* 지원 수요 및 예산 현황에 따라 추가 모집할 수 있음

#### 2. 지원대상업체

- □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·수출(예정)업체
  - ㅇ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
  - ○중소벤처기업부, 해양수산부, 산림청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받고 있는(예정) 기업 제외
    - \* 중복지원은 사업자등록번호/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정하며, 타 기관과 인증 종류 또는 품목이 다르더라도 지원신청 불가(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24개 인증 외의 인증 지원 가능)

## 3. 지원대상 품목

- □ 농림축산식품
  - ㅇ지원대상 품목은 HSK 기준으로 농·임·축산물로 분류되어야 함
  - ○수산물, 비식품 지원 제외(단,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평가를 실 시하여 지원가능)

## 4. 지원대상 인증제도\*

No	인증명		비고			
1	ICO22000**		직전 연도 2개년 수출실적 있는			
1	ISO22000**		업체에 한함			
2		FSSC22000	1 4 4 5 1			
3		BRC				
4	CECL みから	SQF				
5	GFSI 승인인증	IFS				
6		Global GAP				
7		China HACCP				
8		USDA NOP				
9		EU Organic				
10		JAS				
11	A 1417	중국유기인증				
12	유기인증	IFOAM				
			수출실적 있는 업체(미국/EU/캐나다			
13		유기가공식품인증(한국)	수출목적 인증취득)에 한함. 수출포			
			장재 또는 수출 진행 증빙자료 첨부			
14	Halal	1				
15	Kosher					
16	Vegan					
17	EAC					
18	Gluten-free					
19	NON-GMO					
20	FSVP					
21	VQIP					
22	재외국 USA FDA (미국)					
23	등록	BPOM (인도네시아)				
24	0 9	VFA (베트남)				

- \* 농식품 수출확대에 필요한 식품 안전·품질 관련 인증제도를 지원대상으로 함
- \*\* ISO22000과 FSSC22000 중복신청 시 FSSC22000을 우선적으로 선정(ISO22000은 예산상황에 따라 추가 선정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, 예산소진 시 지원 불가)
- \*\*\* 상기 외 인증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(필요 시 수출확대에 필요한 인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)

## 5. 지원기준

- □ 지원범위 및 비율
  - o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(갱신·사후)에 소요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
  - 인증비: 심사비 및 등록비, 실사비(항공료), 제품분석비
  - 대행비: 통·번역비, 컨설팅비, 예비심사비, 교육비, 인증대행 수수료

- ㅇ지원율: 인정소요비용의 70%
- \* 정산세부항목 및 기준 [별첨2] 정산기준 참조
- □ 지원한도: 업체 당 최대 20,000천원(2개 이상의 인증을 신청·취득하는 경우 최대 40,000천원)

## □ 예산 지원비율

구분	배정예산 비율
수출실적(직전 연도 수출실적 USD 1,000\$ 이상) 보유업체	연간 예산 <u>80%</u>
수출예정업체	연간 예산 <u>20%</u>

<sup>\*</sup> 예산상황, 신청현황 등에 따라 비율은 필요시 조정될 수 있음

## 6. 지원대상 선정기준

- □ 대상업체 적합성 확인
  - ㅇ지원대상 업체 및 품목 적합여부
  - ㅇ지원대상 인증제도 적합여부
- □ 선정평가 : 서류심사 결과 50점 이상이어야 하며, 고득점 순으로 선정
  - o 계량평가(60점): 수출성장성(총매출액, 수출실적, 수출증가율) 및 수출준비도 평가
  - ㅇ비계량평가(40점): 인증취득계획, 인증연계 수출계획 평가
  - \* [별첨1]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참조
  - \*\* 대기업체는 고득점 순으로 대기번호가 부여되며, 예산상황에 따라 선정됨 선정기준은 인증완료 업체를 우선으로 하며, 고득점 순으로 예산배정 (대기업체는 인증완료 시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에 인증완료사항 입력)

## 7. 추진절차

한국식품	농식품 수출업체	한국식품	농식품	한국식품
연구원		연구원	수출업체	연구원
사업공모	사업 신청	신청서 검토 및 선정결과 통보, 진행현황 확인	인증취득 및 정산서류 제출 (~11월까지 상시)	정산 검토 및 지급, 사후관리 (~12월까지 상시)

## Ⅱ. 세부사항

## 1. 신청방법

- □ 신청방법: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(www.foodcerti.or.kr)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인증 정보 및 인증 취득·수출 계획서 작성, 필수 구비서류 업로드
- □ 선정기한: 모집기간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
  - \* 이메일 개별통보 및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선정여부 확인
- □ 신청 필수 구비서류
  - ㅇ사업자등록증 사본
  - \* 매출액은 업체가 나이스평가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데이터를 선정평가에 적용하며,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(제조자 간접 수출액 포함)를 반영
  - \*\* 「매출액 정보 등록 및 수출정보 제공동의」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 명원(과세사업자 해당) /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(개인면세사업자 해당) 중 택1하여 제출하여야함.
  - 매출액 등록 실패로 확인된 업체는 담당자에게 연락요망(ex: 법인면세사업자 등)
    \*\*\* 신청서 작성 미비, 필수서류 누락, 수출실적 정보제공 미동의로 인한 선정평가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있음

## 2. 정산방법

- □ **정산방법**: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(www.foodcerti.or.kr)에서 정산신청 세부내역 및 수출성과 작성, 필수 구비서류 업로드
- □ 정산기준: [별첨2] 정산기준 참조
- □ 정산기한: 2025.11.30.까지 (수시 정산)
  - \* '25년 인증취득 완료 건(인증서 발급일 기준)만 정산가능, '25년 이전에 인증을 진행하여 '25년에 인증서 발급된 경우 지원 가능
  - \*\* 인증취득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신청 요망
- □ 정산 필수 구비서류
  - ㅇ취득인증서 사본
  - \* 사후심사의 경우 인증서 내 당해연도 발급일자 표기되지 않을 시 인증기관의 심사보고서 추가 제출
  - ○정산항목별 지출증빙서류(공통: 거래명세서, 국세청에서 발행한 QR코 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, 계좌이체증)
  - \* [별첨2] 정산기준 확인하여 정산 항목별 필수서류 반드시 제출
- □ 지급기한: 정산 숙 구비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

### 3. 기타유의사항

- ○갱신·사후심사 및 ISO22000 신청 시 직전 연도 2개년(2023~2024년) 내 수출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
- ㅇ신청 시 수출실적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(온라인 동의)하여야 함
- ○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한국식품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이어야 함
- \* 컨설팅기관이 등록에 미협조 하거나 등록·정산 시 수수료, 컨설팅내역 등의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정산 불가
- ○선정완료 후 인증종류 변경 및 추가 불가하며, <u>8.31 이후</u> 취소업체는 차 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(시점 변경에 따른 선정평가표 적용은 2026년 부터 실시, 2025년은 종전 10.31 기준 적용)
- ○<u>배정예산 대비 집행률 50% 미만 시, 차년도 선정평가에 감점 적용 될</u>수 있음
- ○신청인증 일부 취소 및 컨설팅기관 변경은 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가 능함
  - \* 컨설팅기관 선택 시 인증 자체추진으로 신청 후 추후 해당 인증 부분취소 또는 컨설팅 의뢰로 변경 불가하며, 이 경우 선정취소 될 수 있음
- ○보조금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청구(허위·과다·중복 청구)시 부당이익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(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)이 부과될 수 있으며, 5년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○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산 신청 시 인증서 발행번호, 전자세금계산 서 정보(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,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, 승인번 호, 작성일자, 공급가액)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
- ○컨설팅기관의 지원금 부정수급 제안(기업의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허위제안), 컨설팅비용 과다책정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의 제안을 받은 경우 한국식품연구원에 신고바람
- ○선정업체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요청 시 진행현황을 보고(온라인 입 력)하여야 함

## 4. 문의

- o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
- ㅇ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(https://www.foodcerti.or.kr)〉고객지원〉온라인상담
- o 담당자연락처
  - 이희나 기술기능원 (063-219-9525 / leehn08@kfri.re.kr)
  - 정재훈 선임기술원 (063-219-9434 / abcjjh@kfri.re.kr)

## [별첨 1]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

# 2025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지원업체 선정평가표

### 1. 적합성 확인

평가구분	평가항목	평가기준		
	취득(예정)인증의 지원대상 적합여부	적합 ( )	부적합()	
	취득(예정)인증 품목의 적합여부	적합 ( )	부적합()	
인중 적합성	신청업체의 지원대상 적합여부 (갱신·사후심사 및 ISO22000 신청 시 직전 연도 2개년 내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기업대상집단, 직전 연도 10/31 이후 사업취소업체 부적합)	적합()	부적합 ( )	

## 2. 계량평가(60점)

평가구분	평가항목	배점	평가기준				
	직전 연도 총 매출액	20	50억 이상	30억 이상 50억 미만	20억 이상 30억 미만	10억 이상 20억 미만	10억 미만
	(금액기준)		20	17	14	11	8
수출			50만불	30만불이성	10만불이상	10만불미만	실적
성장성	직전 연도 수출실적	20	이상	50만불미민	30만불미만	10단물미단	없음
(50점)			20	16	12	8	4
(00 11)	수출증가율		1(11/4/01/2)		4%이상	4%미만	0이하
	(직전 연도 수출액-전전 연도	10		10%미만	8% 미만	-73   C	
	수출액)/전전 연도 수출액*100		10	8	6	4	2
	외국어 키탈로그	외국어 키탈로그     보유       (인쇄본 기준)     5		보유	미보유 0		Г
수출	(인쇄본 기준)			5			
준비도			전체 인증		일부 인증	이즈 =	건설팅 의뢰
(10점)	업체 단독 인증추진	5	자체추진		자체추진	100	L = 76
Ĺ			5		2		0

## 3. 비계량평가\*(40점)

평가항목			A	В	С	D	E
인증취득계획(20점)	인증취득 필요성 및 타당성	10	10	8	6	4	2
[ 인공취득계획(20점)	인증취득 추진계획	10	10	8	6	4	2
인증연계 수출계획(20점)	제품현황	10	10	8	6	4	2
원급한계 구물계획(20점) 	수출 추진계획	10	10	8	6	4	2
А			40	32	24	16	8

<sup>\*</sup> 신청업체에서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, 타 업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시 해당 항목에 최저점을 부여할 수 있음

### ※ 우선 선정 기준

- 신선농산물 수출업체
- 할랄인증 신청업체
- 동일점수 일 경우 직전 연도 수출실적 기준으로 수출액이 많은 업체

## [별첨 2] 정산기준

# 2025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정산기준

## 1. 정산개요

## □ 정산신청금액

- ㅇ정산비용 산출
  - 인정소요비용 [정산 확정된 '인증비' + 정산 확정된 '대행비'] x 70%=정산신청금액
  - 정산확정된 '대행비'는 인정소요비용의 50% 한도 내에서 정산
    - \* 최종정산금액은 배정금액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 (단, 예산상황에 따라 필요시 조정될 수 있음)

## 2. 정산 세부항목 및 기준

구분	정산세부항목	기 준
	심사비 및 등록비	· 인증심사원의 인건비, 인증기관의 행정처리비용 등이 포함된 심사비 및 등록비 -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
인중비	실사비(항공료)  * 해외에 소재한 인증기관 실사단의 국제선 항공료에 한함	• 인증기관 실사단(최대2인)의 국제선 왕복항공료(economy) - 항공권(e-ticket) 또는 여행사 거래명세서, 지출증빙사본 및 실사단 한국체류 세부일정 * 실사단이 다수 국내업체 실사 시 항공료는 전체 방문업체 수로 나누어 해당분만 지급
	제품분석비	・인증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분석비 및 시료 운송비 (운송비 16만원 한도) -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, 분석비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- 운송비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* 인증・등록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제품분석비만 정산 (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) **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수행한 하람・동물성성분 분석 건 신청 불가
	통·번역비	·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번역 및 현장심사를 위한 통역비 - 통역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, 통역 현장사진 - 번역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, 번역 결과물(원문 및 번역본) * 컨설팅비와 중복신청 불가
대행비	컨설팅비	• 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컨설팅 비용 (인증별 4,000천원 한도) - 컨설팅보고서, 컨설팅 기관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

구분	정산세부항목	기 준
	예비심사비	• 인증기관에서 수행한 예비심사(심사조건에 적합한 지를 본 심사에 앞서 심사하는 것) 비용 -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<u>예비심사보고서</u> ,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* 컨설팅비와 중복신청 불가
	교육비	·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해당 인증제도 교육비용(인증별 최대2인) - 교육기관 이수증, 교육비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 * 컨설팅업체에서 실시한 교육은 신청 불가 ** 집합교육은 교육비용/참석인원수 x 2인으로 산출 (참석자명단 제출)
	인증대행 수수료  * 해외에 소재한 인증·등록기관 관련 직접적 신청이 불가한 경우 적용	·인증대행(인증신청 및 접수 등)을 위한 수수료(200만원 한도) - 인증대행기관에서 발행한 대행내역서,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

<sup>\*</sup> 지출증빙사본: 국세청에서 발행한 QR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 이체증(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은 계좌이체증을 함께 첨부하여야 함), 카드 영수증

### □ 정산불가 사항

- ○시설설치비, 물품구입비, 지원업체의 해외현지 방문비용, 식비, 유류비, 선물비, 타업체 방문을 위한 실사비, 렌터카 비용 등 인증취득과 직접 적인 관계가 없거나, 정산세부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
- ㅇ국내 발행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항목
- ㅇ증빙자료 불충분하거나 수수료, 컨설팅내역 등의 허위사항 있는 비용
- ○정산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 당 항목 정산 불가

<sup>\*\*</sup> 환율은 실제 지출(송금 당시 적용된 환율)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송금 당시 환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송금일 기준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

[별첨 3] 주요 변경사항

구분	2024년	2025년	개선 목적
예산 지원 비율	<ul> <li>수출실적(직전연도 수출실적 USD 1,000\$ 이상)</li> <li>보유업체: 연간 예산 70%</li> <li>수출예정업체: 연간 예산 30%</li> </ul>	<ul> <li>수출실적(직전연도 수출실적 USD 1,000\$ 이상)</li> <li>보유업체: 연간 예산 80%</li> <li>수출예정업체: 연간 예산 20%</li> </ul>	수출업체 우선 지원을 통한 수출 연계성 강화
중도 포기 기한	·10.31 이후 취소업체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	· 8.31 이후 취소업체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(시점 변경에 따른 선정평가 적용 은 2026년부터 실시, 2025 년은 종전 10.31 기준 적용)	예산관리 효율성 제고 및 수혜기업 확대
집행률 관리	_	·배정예산 대비 <b>집행률 50%</b> 미만 시, 차년도 선정 평가 에 감점 적용 될 수 있음	예산 과다 신청 후 취소 방지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
정산 기준	·예비심사비: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사본	·예비심사비: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<b>예비심사보고서,</b>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 사본	정산기준 구체화